

의안번호	2203248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D3204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에 대하여 영주귀국 정착금,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보훈병원 지원, 위탁병원 지원, 대부 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영주귀국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83억 6,700만원, 2030년 138억 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11억 1,200만원(연평균 262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영주귀국정착금(안 제10조)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15,460
생활조정수당(안 제12조)	319	337	355	374	393	1,778	356
교육지원(안 제18조)	72	75	77	80	82	387	77
취업지원(안 제19조)	1	—	—	—	—	1	0
보훈병원 지원(안 제21조제2항)	10	10	10	11	11	51	10
위탁병원 지원(안 제21조제3항)	21	23	24	26	27	121	24
대부지원(안 제22조)	46	47	49	50	52	244	49
보훈재가복지서비스(안 제24조)	69	78	83	93	99	423	85
영주귀국지원 재단(안 제29조)	9,679	9,730	10,089	10,462	10,849	50,808	10,162
합 계	78,367	12,587	12,975	13,383	13,801	131,112	26,222

주: 1)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제정안에 따른 대상자로 하였으며,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음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증손자녀 세대주 및 고손자녀 세대주에게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2조(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손자녀 세대주 및 고손자녀 세대주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8조(교육지원)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손자녀이거나 고손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함	의무규정
4	안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그 증손자녀의 자녀 1명(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함	의무규정
5	안 제21조제2항(의료지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음	의무규정
6	안 제21조제3항(의료지원)	만75세 이상으로서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7	안 제22조(대부)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에게 장기저리로 대부를 함	의무규정
8	안 제23조(양로지원), 제2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또는 그 동반가족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5조(양육지원), 제2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에게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9조(영주귀국지원 재단)	정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하여 영주귀국지원 재단을 설립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영주귀국정착금)	○	—
2	안 제12조(생활조정수당)	○	—
3	안 제18조(교육지원)	○	—
4	안 제19조(취업지원)	○	—
5	안 제21조제2항(의료지원)	○	—
6	안 제21조제3항(의료지원)	○	—
7	안 제22조(대부)	○	—
8	안 제23조(양로지원), 제2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	미대상: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양로지원시설이 수원보훈원밖에 없으며 입소정원인 205명에 대한 양로지원비를 매년 교부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9	안 제2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	—
10	안 제25조(양육지원), 제2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	미대상: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원보훈원 양육 지원자가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11	안 제2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미대상: 미미할 것으로 예상
12	안 제29조(영주귀국지원 재단)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이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제정안에 따른 대상자로 적용하여 추계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 등록 유족의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로, 제정안에 따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고손자녀 현황은 부존재

- 법무부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된 후손 인원은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영주귀국 증·고손자녀 인원 파악이 불가함
- 다만,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훈부에 후손확인을 의뢰하며, 국가보훈부는 2007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후손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자료의 한계로 추계기간 동안 사망인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규유입 인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신규 유입 인원뿐만 아니라 기존 인원 모두를 포함하여 추계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의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영주귀국정착금(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중 세대주에게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영주귀국정착금 지원 대상가구수를 추정한 후 가구원수별 영주귀국정착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주귀국정착금’ 사업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1995년도부터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상자) 제정안에 따른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증손 자녀·고손자녀 중 세대주로서, 고손자녀는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추계에서는 증손자녀에 한정(증손 모두 고손을 동반하여 귀국하였고, 고손 홀로 귀국한 사례는 없음)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증손 509명, 고손 238명으로 총 747명으로 나타남([표 2])
- 법무부 제출자료(개인정보제공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명자료 제공하지 않음)에 따르면 연도별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자, 손, 증손, 고손, 내손 이하 모두 포함)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467명([표 3])으로 매년 평균 47명의 신규인원이 발생하며, 이중 증손은 [표 4]의 41%에 해당하는 19명으로 예상되어 신규 편입 증손인원은 매년 19명으로 추정하고, 고손은 [표 4]의 27%에 해당하는 13명으로 예상되어 신규 편입 고손인원은 매년 13명으로 추정([표 5])

[표 2] 독립유공자 후손 현황: 2007~2023년

(단위: 명)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증손	31	98	61	67	46	38	29	19	5	27	4	17	12	17	12	24	2	509
고손	14	17	29	25	34	8	23	15	6	20	2	11	4	8	6	16	0	238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연도별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 현황: 2014~2023년

(단위: 명)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연평균
인원	44	34	66	42	47	66	37	38	58	35	467	47

자료: 법무부

[표 4]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중 증손·고손 비율 현황: 2015~2024년 6월

(단위: 명,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	합계	비율 (%)
자	0	2	0	1	0	0	0	1	0	0	4	1
손	4	22	6	11	8	10	9	8	1	4	83	27
증손	5	27	4	17	12	17	12	24	2	6	126	41
고손	6	20	2	11	4	8	6	16	0	10	83	27
내손이하	0	1	0	7	1	0	0	2	0	1	12	4
합계	15	72	12	47	25	35	27	51	3	21	308	1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5] 독립유공자 증손·고손 수 추정: 2023~2030년

(단위: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증손 누적인원	509	528	547	566	585	604	623	642
고손 누적인원	238	251	264	277	290	303	316	329
합계	747	779	811	843	875	907	939	971

주: 2024년부터는 추정치로서 증손 및 고손이 매년 각각 19명(47명 중 41%), 13명(47명 중 27%)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단가) 영주귀국정착금은 1인가구 8,900만원, 2~3인가구 1억 2,800만원, 4인 이상 1억 5,300만원으로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구수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비율을 적용

[표 6] 연도별 정착금 지급단가 현황

(단위: 만원)

가구별 인원구성	1인	2~3인	4인이상
2005.6.1.~2019.12.31.	4,500	5,500	7,000
2020.1.1.~2022.12.31.	5,000	6,000	7,500
2023.1.1.~현재	8,900	12,800	15,3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7] 정착지원금 지급 가구수 현황: 2019~2024년 6월

(단위: 가구, %)

가구	'19	'20	'21	'22	'23	'24. 6.	합계	비율 (%)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	—	—	—	—	2	—	2	—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 1명만 있는 경우	2	4	2	1	3	1	13	27.7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2~3명의 경우	6	2	6	6	5	3	28	59.6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4명 이상의 경우	2	2	1	1	—	—	6	12.8
합계	10	8	9	8	10	4	49	100

주: 1)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는 최근 6년간 2명으로 미미하게 발생하므로 비율 계산에서 제외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요비용) 대상가구수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수별 지급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773억원으로 예상

[표 8] 영주귀국정착금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자(A, 가구)		566	19	19	19	19	-
지급단가 (C, 백만원)	1인가구	89	89	89	89	89	-
	2-3인가구	128	128	128	128	128	-
	4인이상	153	153	153	153	153	-
가구수 비중 (B, %)	1인가구	27.7	27.7	27.7	27.7	27.7	-
	2-3인가구	59.6	59.6	59.6	59.6	59.6	-
	4인이상	12.8	12.8	12.8	12.8	12.8	-
소요비용(A x B x C, 백만원)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생활조정수당(안 제12조)

-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중 세대주에게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가구수를 추정한 후 가구원수별 생활조정수당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생활조정수당’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242~370천원)을 지급함
 - (대상자) 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는 증손자녀에 한정함
 - 제정안에서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는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증손 모두 고손을 동반하여 귀국하였으며 고손 홀로 귀국한 사례는 없으므로 증손자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가정
 - (지원 비중) 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에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인 15.4%¹⁾ 적용하여 산출
 - (단가) 생활조정수당의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별로 구분하여 24.2만원에서 37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이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1)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중 저소득층 분포 인용(338쪽)

[표 9] 생활조정수당 월지급단가: 2021~2025년

(단위: 천원)

	기준중위소득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연평균 증가율(%)
가구원 3인 이하	50%이하	220	220	220	242	242	2
	40%이하	252	252	252	277	277	2
	32%(30%)이하	283	283	283	311	311	2
가구원 4인 이상	50%이하	273	273	273	300	300	2
	40%이하	305	305	305	336	336	2
	32%(30%)이하	336	336	336	370	370	2

주: 2024년부터 '30%이하'에서 '32%이하'로 변경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요비용) 대상자에 가구원 수 비중, 각 기준중위소득별 지급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17억 7,800만원으로 예상

[표 10] 생활조정수당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가구)			566	585	604	623	642	—
저소득층 가구(B=A x 15.4%, 가구)			87	90	93	96	99	—
가구수 비중 (C, %)	가구원 3인 이하	50%이하	10.2%	10.2%	10.2%	10.2%	10.2%	—
		40%이하	15.7%	15.7%	15.7%	15.7%	15.7%	—
		30%이하	69.2%	69.2%	69.2%	69.2%	69.2%	—
	가구원 4인 이상	50%이하	1.3%	1.3%	1.3%	1.3%	1.3%	—
		40%이하	1.2%	1.2%	1.2%	1.2%	1.2%	—
		30%이하	2.3%	2.3%	2.3%	2.3%	2.3%	—
지급단가(D, 천원)	가구원 3인 이하	50%이하	247	252	257	262	267	—
		40%이하	283	288	294	300	306	—
		30%이하	317	324	330	337	343	—
	가구원 4인 이상	50%이하	306	312	318	325	331	—
		40%이하	343	350	357	364	371	—
		30%이하	377	385	393	400	409	—
소요비용 (B x C x D x 12개월, 백만원)	가구원 3인 이하	50%이하	26	28	29	31	32	—
		40%이하	46	49	52	54	57	—
		30%이하	229	242	255	268	282	—
	가구원 4인 이상	50%이하	4	4	5	5	5	—
		40%이하	4	5	5	5	5	—
		30%이하	9	10	10	11	11	—
합 계(백만원)			319	337	355	374	393	1,778

주: 1) 가구수 비중은 국가보훈부 예산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중 최근 5년간 평균 사용

2)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따라 2025년의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2024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6년부터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2%)을 적용하여 추계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교육지원(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추정한 후 교육지원 연간 단가를 곱함
 - (기존사업 현황)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사업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수업료 국비보전, 사립대 수업료 국고지원 등을 수행함

[표 11] 최근 4년간 독립유공자 교육 지원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추정치)	평균
대상자 (A)	741	749	700	601	597	678
소요비용 (B)	1,468	1,309	1,317	1,223	1,230	1,309
지원단가 (B÷A)	1.98	1.75	1.88	2.04	2.06	1.94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자) 제정안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는 증손자녀에 한정함
 - 제정안에서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는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증손 모두 고손을 동반하여 귀국하였으며 고손 홀로 귀국한 사례는 없으므로 증손자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가정
- (지원 비중) 2024년 8월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수는 8,928명, 교육지원 대상자수는 597명으로 교육지원 비중은 6.6%로 나타나 이를 적용
- (단가) 교육지원단가는 [표 11]의 최근 5년간 평균인 194만원으로 가정
- (소요비용) 대상자 수에 교육지원 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3억 8,700만원으로 예상

[표 12] 교육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명)	566	585	604	623	642	—
지원비중(B, %)	6.6	6.6	6.6	6.6	6.6	—
지원대상(C=A x B, 명)	37	39	40	41	42	—
지원단가(D, 만원)	194	194	194	194	194	—
소요비용(C x D, 백만원)	72	75	77	80	82	387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취업지원(안 제19조)

-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그 증손자녀의 자녀 1명(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정한 후 취업지원 연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취업지원’ 사업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직업상담사 인건비, 취업능력개발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를 제공

[표 13] 최근 4년간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추정치)	평균
대상자 (A)	149	90	86	68	107	100
소요비용 (B)	27	17	16	17	28	21
지원단가 (B÷A)	0.18	0.19	0.19	0.25	0.26	0.21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 제정안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로 한정함
 - － 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증손자녀의 자녀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증손자녀에 한정하여 추계함
- (지원 비중) 2024년 8월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수는 8,928명, 취업지원 대상자수는 107명으로 취업지원 비중은 1.2%로 나타나 이를 적용
- (단가) 취업지원단가는 [표 13]의 최근 5년간 지원단가의 평균인 21만원으로 가정
- (소요비용) 대상자 수에 취업지원 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147만원으로 예상

[표 14] 취업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명)	566	19	19	19	19	-
지원비중(B, %)	1.2	1.2	1.2	1.2	1.2	-
지원대상(C=A x B, 명)	7	0	0	0	0	-
지원단가(D, 백만원)	0.21	0.21	0.21	0.21	0.21	-
소요비용(C x D, 백만원)	1.47	-	-	-	-	1.47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보훈병원 지원(안 제21조제2항)

-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후손(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에게 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보훈병원 진료지원 대상자를 추정한 후 연간 수진횟수, 연간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보훈병원 진료’ 사업에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

[표 15]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병원 지원 현황: 2020~2024년 7월

	2020	2021	2022	2023	2024.7.	평균
대상자(A, 명)	30,990	33,851	31,540	35,856	20,680	30,583
소요비용(B, 백만원)	906	914	836	1,098	575	866
지원단가(B÷A, 원)	29,244	26,997	26,513	30,633	27,797	28,237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 보훈병원 진료지원 대상자인 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수는 [표 5]의 2025년 기준 총 811명으로 추정됨

[표 16] 보훈병원 진료 대상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독립유공자 증손·고손자녀 수	843	875	907	939	9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간 수진횟수) 2023년 기준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병원 수진횟수인 0.4회를 적용
- (연간 진료단가) 최근 5년간 진료단가의 증감 추세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평균인 28,237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소요비용) 대상자 수에 연간 수진횟수, 연간 진료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5,100만원으로 예상

[표 17] 보훈병원 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자(A, 명)	843	875	907	939	971	-
연간 수진횟수(B, 회)	0.4	0.4	0.4	0.4	0.4	-
연간 진료단가(C, 원)	28,237	28,237	28,237	28,237	28,237	-
소요비용(A x B x C, 백만원)	10	10	10	11	11	51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위탁병원 지원(안 제21조제3항)

- 제정안에 따라 만 75세 이상으로서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만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증손 대상자를 추정한 후 연간 수진횟수,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위탁병원 진료’ 사업에서는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

[표 18] 최근 4년간 만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위탁병원 지원 현황: 2020~2024년 7월

	2020	2021	2022	2023	2024.7.	평균
대상자(A, 명)	27,015	15,330	15,287	22,404	13,460	18,699
소요비용(B, 백만원)	475	275	291	432	317	358
지원단가(B÷A, 원)	17,583	17,950	19,061	19,290	23,551	19,487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 만 75세 이상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수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70세 이상의 비중인 20.4%를 곱하여 추정
 - 자료의 한계로 70세 이상 비중을 적용하였으며, 과대추계의 가능성 있음
- (연간 수진회수) 2023년 기준 위탁병원 감면 수진횟수 8.7회를 적용
- (연간 진료단가) 최근 5년간 진료단가가 증가하고 있어 2023년 단가인 19,290원에 4년간 연평균증가율 3.1%를 곱하여 추계
- (소요비용) 대상자 수에 연간 수진횟수, 연간 진료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1억 2,100만원으로 예상

[표 19] 위탁병원 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증손대상자(A, 명)	566	585	604	623	642	-
의료대상자(B=A x 20.4%, 명)	115	119	123	127	131	-
연간 수진횟수(C, 회)	8.7	8.7	8.7	8.7	8.7	-
연간 진료단가(D, 원)	21,140	21,796	22,471	23,168	23,886	-
소요비용(B x C x D, 백만원)	21	23	24	26	27	121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 대부지원(안 제22조)

- 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에게 대부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대부지원 대상자를 추정한 후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국가유공자등 대부(융자)’사업에서는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에게 장기저리 대부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사업에서는 위탁은행 계약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이차보전금²⁾)를 보훈기금에서 보전하고 있음

2) 이차보전금 = 위탁은행평균잔액 × 이차보전율

[표 20]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대부 지원 실적: 2019~2023년

(단위: 명, 백만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독립유공자 수권자(A, 명)		8,036	8,351	8,558	8,761	8,859	8,513
융자금	직접대부인원(B, 명)	105	149	85	104	101	109
	직접대부지원율(C, %)	1.3	1.8	1.0	1.2	1.1	1.3
	직접대부지원단가(D, 백만원)	4.2	3.6	8.2	5.5	4.5	5.2
	소계(E, 백만원)	441	536	697	572	455	540
이차 보전금	위탁대부인원(F, 명)	416	523	359	378	434	422
	위탁대부지원율(G, %)	5.2	6.3	4.2	4.3	4.9	5
	위탁은행평균잔액(H, 백만원)	6,924	7,787	8,060	8,641	9,086	8,100
	1인당 평균잔액(I, 백만원)	16.6	14.8	22.5	22.9	20.9	19.6
	이차보전율(J, %)	1.01	0.49	0.41	1.48	3.27	1.33
	소계(K, 백만원)	70	38	33	128	297	113
합계(E+K, 백만원)		511	574	730	700	752	653

주: 1) 직접대부(위탁대부)지원율 : 대부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직접대부(위탁대부)받은 건수 비율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자) 제정안에 따른 대부지원 대상자는 증손자녀에 한정함
 - 제정안에서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는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증손 모두 고손을 동반하여 귀국하였으며 고손 홀로 귀국한 사례는 없으므로 증손자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가정
- (지원비중)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수에 최근 5년간 평균 직접대부지원율 1.3%, 위탁대부지원율 5%를 곱하여 대상자를 추정
- (단가) 직접대부지원단가는 최근 5년간 평균인 520만원으로 하고, 위탁대부지원단가는 최근 5년 1인당 위탁은행평균잔액 1,960만원에 위탁대부 이차보전율 최근 5년 평균 1.33%를 곱하여 산출
- (소요비용) 대상자 수에 단가를 곱하여 직접대부(융자)와 위탁대부(이차보전금)의 산출한 합계는 향후 5년간 2억 4,400만원으로 예상

[표 21] 대부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자(A, 명)		566	585	604	623	642	—
융자금	대부지원율(B, %)	1.3	1.3	1.3	1.3	1.3	—
	직접대부지원단가(C, 백만원)	5.2	5.2	5.2	5.2	5.2	—
	소요비용(D=A x B x C, 백만원)	38	40	41	42	43	204
이차 보전금	위탁대부지원율(E, %)	5.0	5.0	5.0	5.0	5.0	—
	1인당 위탁은행평균잔액(F, 백만원)	19.6	19.6	19.6	19.6	19.6	—
	이차보전율(G, %)	1.33	1.33	1.33	1.33	1.33	—
	소요비용(H=A x E x F x G, 백만원)	7	8	8	8	8	39
합계(D+H)		46	47	49	50	52	244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아. 보훈재가복지서비스(안 제24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후손 또는 그 동반가족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추정한 후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에서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원 근로자(사회복지사, 재가보훈실무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고령 보훈대상자(독거·노인부부세대)에게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여 가사·건강·편의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22] 최근 5년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실적(독립유공자 포함):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대상자(A, 명)	15,945	15,954	15,984	13,052	11,813	14,550
소요비용(B, 백만원)	42,487	43,633	43,709	42,225	40,627	42,536
지원단가(B÷A, 백만원)	2.6	2.7	2.7	3.2	3.4	2.9

주: 재가보훈실무관(공무직)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만 분리하는 것은 불가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 제정안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는 [표 5]의 독립유공자 후손(증손 및 고손자녀) 수에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 유족 지원율인 2%를 곱하여 추정

- (단가) 최근 5년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3년 지원단가 340만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6.3%를 곱하여 산출
- (소요비용) 추정된 대상자 수에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4억 2,300만원으로 예상

[표 2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명)	843	875	907	939	971	—
지원비중(B, %)	2.0	2.0	2.0	2.0	2.0	—
지원대상(C=A x B, 명)	17	18	18	19	20	—
연간지원단가(D, 백만원)	4	4.3	4.6	4.9	5.2	—
소요비용(C x D, 백만원)	69	78	83	93	99	423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 영주귀국지원 재단(안 제29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하여 영주 귀국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신설 조직규모를 국가보훈부의 계획안(유사사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준용)을 참조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임차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
 - (인원 구성)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영주귀국지원재단의 구성은 정책연구국(8명), 대외지원국(12명), 대외협력국(11명), 행정지원과(9명) 등 4개 부서로 구성하여, 임직원은 상임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일반정규직 34명, 무기계약직 6명 등 총 42명 규모로 가정함
 - (인건비) 42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하고, 직급별 보수(수당 포함)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 후, 퇴직적립금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법정부담금을 합하여 인건비를 산출³⁾⁴⁾

[표 24] 직급별 보수 추정(2024년 결산 기준)

(단위: 명, 만원)

	상임기관장	상임이사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합 계
인원수 (A)	1	1	34	6	42
1인당 연간 보수 (B)	14,201	11,360	6,073	3,391	-
소요비용 (A×B)	14,201	11,360	206,482	20,346	252,38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5]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A)	2,717	2,820	2,927	3,038	3,154	14,656
퇴직적립금 (B=A÷12)	226	235	244	253	263	1,221
법정부담금 (C)	308	322	337	353	369	1,689
합 계 (A+B+C)	3,251	3,377	3,508	3,644	3,786	17,566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16.68%을 인건비에 적용하여 산출
 - 인건비 대비 경상비 비율: 기본경비 15억 8,000만원 ÷ 인건비 94억 7,500만원 = 16.68%(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3년 예산 기준)
- (사업비) 사업비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156.41%을 인건비에 적용하여 산출⁵⁾
 -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사업비 148억 2,000만원⁶⁾ ÷ 인건비 94억 7,500만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6	3.9	3.8	3.8	3.8	3.8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공공기관 기관부담률은 2026년 11.330%, 2027년 11.425%, 2028년 11.519%, 2029년 11.614%, 2030년 11.704%임

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주요 사업별 사업비(2023년)

(단위: 백만원)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자립자활 지원	교육개발 및 지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정착금 지급	합계
사업비	3,594	4,663	2,758	1,543	2,262	12,957	27,776

자료: 국가보훈부

원 = 156.41%(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3년 예산 기준)

- (임차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1인당 임대면적은 42.55㎡로 나타나 여기에 42명을 곱하여 총임대면적 1,787㎡(42명×42.55㎡)을 산출한 후 서울지역 임대료 23.5천원(2024년 2사분기, 한국부동산원)에 12개월을 곱하고 최근 5년간 임대료 상승률 평균(0.2%)을 적용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5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신규 인원 42명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1인당 자산취득비⁷⁾를 곱하여 2억 9,538만원(42명×7,033천원)으로 산출
- (합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임차비, 자산취득비를 합계한 결과 향후 5년간 508억 800만원으로 예상

[표 26] 영주귀국지원 재단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인건비 (A)	3,251	3,377	3,508	3,644	3,786	17,566
기본경비 (B=A×16.68%)	542	563	585	608	631	2,930
사업비 (C=A×156.41%)	5,084	5,282	5,487	5,700	5,921	27,476
임차비 (D)	506	507	508	509	510	2,540
자산취득비 (E)	295	-	-	-	-	295
합 계 (A+B+C+D+E)	9,679	9,730	10,089	10,462	10,849	50,808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차. 추계결과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에 대하여 영주귀국정착금,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보훈병원 지원, 위탁병원 지원, 대부 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영주귀국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11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23년 사업비는 277억 7,600만원인데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사무는 영주귀국지원 재단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보훈부에서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정착금지급을 차감하면 148억 2,000만원임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공공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는 7,033천원임

[표 2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영주귀국정착금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생활조정수당	319	337	355	374	393	1,778
교육지원	72	75	77	80	82	387
취업지원	1	-	-	-	-	1
보훈병원 지원	10	10	10	11	11	51
위탁병원 지원	21	23	24	26	27	121
대부지원	46	47	49	50	52	244
보훈재가복지서비스	69	78	83	93	99	423
영주귀국지원 재단	9,679	9,730	10,089	10,462	10,849	50,808
합 계	78,367	12,587	12,975	13,383	13,801	131,112

주: 1)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제정안에 따른 대상자로 하였으며,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음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